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방부 (군인연금과)
연 월 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군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해보상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군인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군인연금법」에서 분리하여 「군인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연금법」(법률 제16760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 및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대통령령 제0000, 2020. 0. 00. 공포, 6. 11.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문체계 재정비

군인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군인연금법」에서 분리하여 「군인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장해급여, 재해유족급여, 부조급여 등 군인 재해보상 관련 조항을 분리하여 군인 재해보상법령에 반영하고 재정리

* (현행) 연금제도, 재해보상 관련 23개 조문 → (개정) 연금제도 관련 18개 조문

나. 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신고 방법 및 절차 신설(안 제8조)

분할연금 산정 시 별거·가출 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신고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0. 3. 3. ~ 2020. 4.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3) 군인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과 함께 추진됨

국방부령 제 호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기간의 계산방법) ① 군인의 복무기간은 퇴직한 날의 전 날이 속하는 연월에서 임용된 날이 속하는 연월을 뺀 수에 1월을 더한 연월수로 계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투에 참가한 기간이 있는 군인의 복무기간은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에 전투종료 연월일에서 전투참가 연월일을 뺀 수에 1을 더한 합에 2를 곱한 연월일수로 계산한 기간을 더하여 계산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복무기간에서 공제한다.

1. 탈영기간: 탈영일부터 복귀한 날의 전날까지
2. 제대기간: 제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시 현역으로서 치르는 병역에 복무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3. 「군인 재해보상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간:

군간부후보생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무관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다만, 「군인 재해보상법」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른 복무 중 지원 군간부후보생의 교육기간은 복무기간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3조(복무기간 산입 신청) ① 「군인연금법 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의 산입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복무기간 산입 신청서에 병적기록표를 첨부하여 소속 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소속 부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급여 사유의 확인 등) ① 육군·해군·공군 (이하 "각군"이라 한다) 참모총장 및 국군재정관리단장은 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심사담당자(해당 부대 또는 기관에서 각종 급여에 대한 청구자격의 유무 및 관계 기록의 내용을 심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급여청구서, 급여액산정서, 퇴직에 관한 인사자료와 연금기록 전산 명세서의 일치 여부
2. 급여 사유의 발생 여부
3. 기여금의 납입상황

4. 연도별 기준소득월액의 변동사항
 5. 전투참가부대별 전투참가기간
 6. 탈영기간, 실종기간, 포로기간, 정직기간 또는 휴직기간
 7. 「군인연금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에 따른 급여의 제한 사유 유무
 8.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급여의 조정 사유 유무
 9.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 여부 및 복무기간
- ② 각군 참모총장, 및 국군재정관리단장은 급여액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재정담당자(해당 부대 또는 기관에서 각종 급여의 급여액을 심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하여금 급여청구서와 급여액산정서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심사담당자 및 재정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제5조(연금청산 신청) ① 영 제21조에 따라 연금의 청산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퇴역·퇴역유족 연금청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이주로 인하여 연금을 청산하려는 경우
 - 가.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1부
 - 나. 여권 사본 1부

다.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급여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만 해당한다) 1부

2. 국적상실로 인하여 연금을 청산하려는 경우

가.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기본증명서 1부
나. 여권 사본 1부

다.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급여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만 해당한다) 1부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서를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국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외국거주자의 신상신고)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외국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거나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신상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영문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거주국의 공공기관 등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작성한다)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는 해당 서식의 내용을 확인하는 공증서류 또는 거주국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거주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퇴역연금 등의 청구) ① 영 제29조 및 제41조에 따라 퇴역연

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수당(퇴역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청구하는 퇴직수당을 말한다)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퇴역연금·퇴역연금공제일시금·퇴직수당 청구서에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9조제2항·제29조 및 제41조에 따른 기여금 반환(기여금을 납부하였던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퇴역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청구하는 퇴직수당을 말한다)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기여금 반환·퇴역연금일시금·퇴직일시금·퇴직수당 청구서에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참모총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한 후 해당 청구서를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의 신고 절차 등) 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호에 따른 퇴직급여의 수급권자,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의 수급권자 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청구자가 영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이하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이라 한다)을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분할연금·일

시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등이 청구된 후에 법원의 재판 등에 따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이 당초 신고내용과 달리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제3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2.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3.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서 사본, 법원의 재판서 사본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국군재정관리단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확인하되,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① 퇴역연금 수급자가 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군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재취업·재퇴직 신고서에 재취업 또는 재퇴직한 기관의 인사발령장 사본(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퇴역연금 수급자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연금 외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연금 외 소득 신고서를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32조제5항에 따라 연금지급정지액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퇴역유족연금 등의 청구) ① 영 제9조제3항, 제18조제1항, 제35조 및 제42조에 따라 기여금 반환(유족이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특례급여,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부가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또는 퇴직수당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참모총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군인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청구인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19세 이상의 자녀인 경우만 해당

한다)

4.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임신 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특례급여 외의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로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혼인관계증명서 1부

7. 부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인이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8. 청구인의 실명확인 통장 사본 1부

②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친족이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망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특례급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례급여 사용계획서 1부

2. 군인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3. 사망한 군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망한 군인의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③ 각군 참모총장이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망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특례급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특례급여

사용계획서를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특례급여를 받은 자는 특례급여를 사용한 후 사용명세서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퇴역유족급여 등분 청구) ① 퇴역유족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받지 아니하던 유족이 법 제11조에 따른 퇴역유족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받을 것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퇴역유족급여 등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청구인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19세 이상의 자녀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임신 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혼인관계증명서 1부

5. 부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인이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6.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퇴역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 ① 법 제31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수급권 이전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서식의 퇴역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청구인의 실명확인 통장 사본 1부

② 영 제40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장부의 비치) 각군 참모총장 및 국군재정관리단장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장부와 문서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각종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기여금 등 비용의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금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연금기록상황의 전산관리) ① 각군 참모총장 및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에 대하여 개인별로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군 참모총장은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그 밖의 신분상의 변동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통계의 작성 및 유지) 국방부장관은 비용 징수 및 각종 급여의 지급 등 군인연금 운영에 필요한 각종 통계를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급여수급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절차) 국군재정관리단장은 급여의 수급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급여수급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 등에 의하여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한 후 급여수급에 관한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발급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급여의 수급자가 신청한 경우: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2.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급여의 수급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제17조(급여를 받을 예금계좌의 변경) 급여의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예금계좌를 변경하려면 예금계좌를 변경하려는 달의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2.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제18조(서식) ① 영 제67조에 따라 군인연금업무에 필요한 서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 합산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2. 영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유족대표자 선정서와 유족대표자 변경 선정서 및 유족대표자 선정 해제서: 별지 제3호서식
3. 영 제2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4.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 선임장과 대리인 해임장: 별지 제6호서식
5.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퇴역연금 등 급여의 종류 변경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6.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퇴역연금 차액 지급 청구서, 영 제44조제

4항에 따른 잔여 퇴직급여 청구서 및 잔여 퇴직수당 청구서: 별지 제15호서식

7. 영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 별지 제2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서식 외의 연금업무에 필요한 서식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규칙」(국방부령 제000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복무기간 산입 신청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알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

신청인	소속 부대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임용 연월일	계급	군번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에 [] 아니요

신청 내용	복무구분	계급
	[]	
	산입을 받으려는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 개월 수
	. . . ~ . . .	개월
	감축기간	감축 개월 수
	. . . ~ . . .	개월
감축기간	감축 개월 수	
. . . ~ . . .	개월	
감축기간	감축 개월 수	
. . . ~ . . .	개월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산입을 신청합니다.

의
호
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 제 부대장 귀하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 사실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의
의
의

()군 제 부대장

직인

담당부서명:

담당자 설명:

전화번호: ()

국군재정관리단장 귀하

첨부서류	뒤 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뒤 쪽>

신청인 첨부서류	병적기록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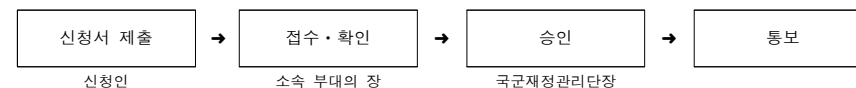
작성방법

1. 신청내용의 복구부분란에는 아래의 복구부분을 참고하여 해당되는 내용을 적으시고, [] 안에는 해당 번호를 적으십시오.
- [1] 현역형 [2] 지원에 하위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3] 방위병 [4] 전두경찰 [5] 교정시설경비교도 [6] 의무소방원
- [7] 상근예비역 [8] 공익근로자에게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업무만 해당됩니다.) 자연계교원오원
- [10] 특수전문오원 [11] 교보병(敎保兵) [12] 학보병(學保兵) [13] 그 밖의 군복무
2. 신청내용의 간임을 받으려는 임용 전 군복무기간란에는 입대 연월일과 전역 연월일을 적으십시오.
- ※ 다음의 간임을 복무기간에 포함할 수 없는 기간으로서 복구할 수 없는 기간으로서 복구할 수 없는 간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과거 군인·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의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에 이미 산입된 사병복무기간
- 과거 공무원 경력 중의 일대 휴직기간
- 장교·부사관·준사관 복무기간으로 「군인연금법」을 적용받은 기간
- 공익법무관 복무기간
- 공중보건 의사 복무기간
- 특별보충역 실무중사기간
- 학군부사관후보생(RNTO) 교육기간 및 실무 중사기간
- 국도건설단 복무기간
- 무관후보생 기간(군복무 중 지원 무관후보생의 기간을 제외합니다)
- 공익근무요원 중 예술·체육요원 병역의무 수행기간
- 현역으로서 치르는 병역 미필 보충역
- 방위병으로 6개월 미만 복무자 등

3. 신청내용의 감축기간란에는 군복무 중의 사고기간(형의 집행기간, 영창기간, 복무이탈기간)을 적으십시오.
※ 신청서를 거짓으로 또는 조작하여 작성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사실을 근거로 작성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재임용 연월일		
	계급		군번		소속 부대명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예 [] 아니요		
신청 내용	퇴직 당시 부대명 또는 기관명		퇴직 당시 계급 또는 직급		군번		
	합산을 받으려는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 . . . ~ . . . (년 월)				반납해야 할 퇴직급여액 납부방법 [] 일시납부		
	. . . ~ . . . (년 월)				[] ()회 분할납부		
	전투종사기간 . . . ~ . . . (년 월)						
	퇴직급여의 종류 [] (퇴역·퇴직·조기퇴직)연금 [] (퇴역·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 [] (퇴역·퇴직)연금공제일시금 [] 퇴직급여 미수령						

()군 제 부대장 귀하

()군 제 부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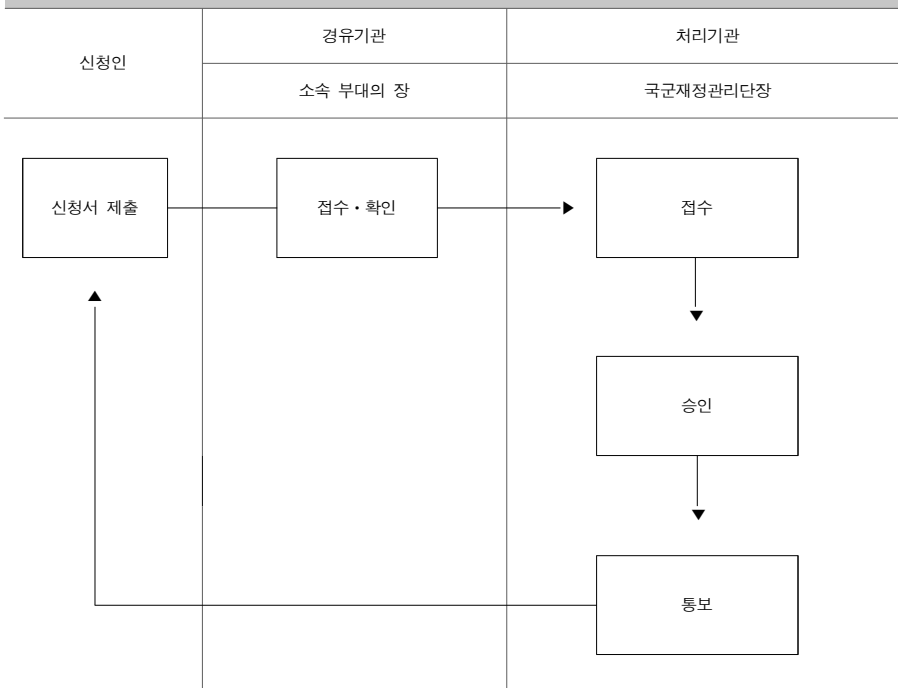
국군재정관리단장 귀하

- 21 -

작성방법

1. 합산을 받으려는 경력이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인 경우에는 신청내용의 퇴직 당시 부대명 또는 기관명란에 "공무원" 또는 "사립 학교교직원"이라고 적고, "기관명" 또는 "해당 학교명"을 적으십시오.
2. 신청내용의 합산을 받으려는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란에는 「군인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았던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적으십시오. 이 경우 해당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 전체를 합산신청해야 하며 일부기간만을 합산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3. 신청내용의 납부방법란에는 해당하는 [] 안에 "V" 표시를 하되,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여 신청하는 분할횟수를 적으십시오.
 - 가. 일시납부: 지정된 납부월에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 나. 분할납부: 합산대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60회 이내
 합산대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48회 이내
 합산대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24회 이내
- * 분할납부액은 일시납부액에 분할납부이자를 가산한 후 분할납부 횟수로 똑같이 나눈 금액입니다.
4. 신청내용의 전후통사기간란은 「군인연금법」을 적용받은 사람으로서 전후통사기간이 있는 경우에만 그 기간을 적으십시오.

처리절차



[] 유족대표자 선정서
[] 유족대표자 변경 선정서
[] 유족대표자 선정 해제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예 [] 아니요
	주소		사망한 군인과의 관계
	동순위 유족의 위임 내용	[] 유족대표자 선정 [] 유족대표자 변경(변경 사유:) [] 유족대표자 선정 해제(해제 사유:)	
위임자	성명	대표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서명)		
	주소		전화번호
	성명	대표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서명)			
주소		전화번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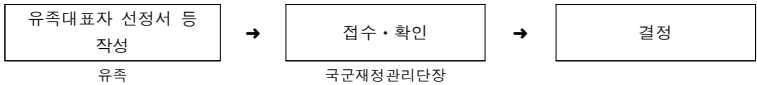
국군재정관리단장 귀하

첨부서류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가.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 나.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 2.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대표자와 위임자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 대표자의 동순위 유족의 위임내용란의 [] 안에 "√"표시를 하십시오.
- 동순위 유족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하여 계속하여 적으십시오.
- 위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위임자의 성명란에 서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자필로 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실제 거주하는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		
	직장명	직장 전화번호	
	직장 주소		
환수금 분할 신청 내용	총 급여환수금 원	일시납부금액 원	분할신청금액 원 ()회 ()일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2조제4항 단서에 따라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군재정관리단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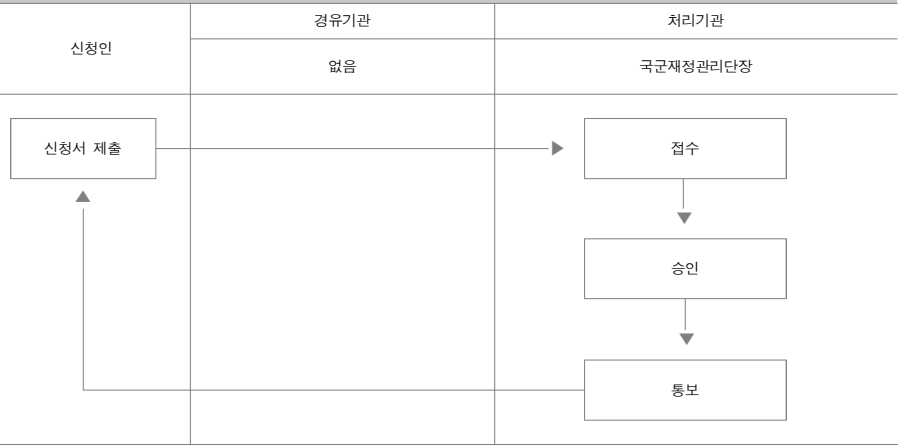
유의사항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후 분할납부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신청인의 실제 거주하는 주소란은 실제 거주하는 주소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른 경우에만 적으십시오.
2. 환수금 분할신청 내용의 총 급여환수금란에는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을 적으십시오.
3. 환수금 분할신청 내용의 일시납부금액란에는 현재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적으십시오.
4. 환수금 분할신청 내용의 분할신청금액란에는 환수금의 납부를 분할로 신청하는 금액을 적으십시오.
5. 환수금 분할신청 내용의 분할신청 횟수란에는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여 신청하는 분할횟수를 적으십시오.
가.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이내
나.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이내
다. 반납해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이내
6. 환수금 분할신청 내용의 월납입일란에는 매월 입금할 수 있는 날짜를 적으십시오.

처리절차



[] 퇴역
[] 퇴역유족 연금청산 신청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연금증서번호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예 [] 아니요
	주소	출국예정 연월일 또는 국적상실 연월일	
	청구 사유	[] 국적상실 [] 해외이주	
	급여수령 금융회사 등 은행	계좌번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금의 청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군재정관리단장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1. 해외이주로 인하여 연금을 청산하려는 경우 가.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1부 나. 여권 사본 1부 다.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급여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국적상실로 인하여 연금을 청산하려는 경우 가.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기본증명서 1부 나. 여권 사본 1부 다.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급여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국사 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
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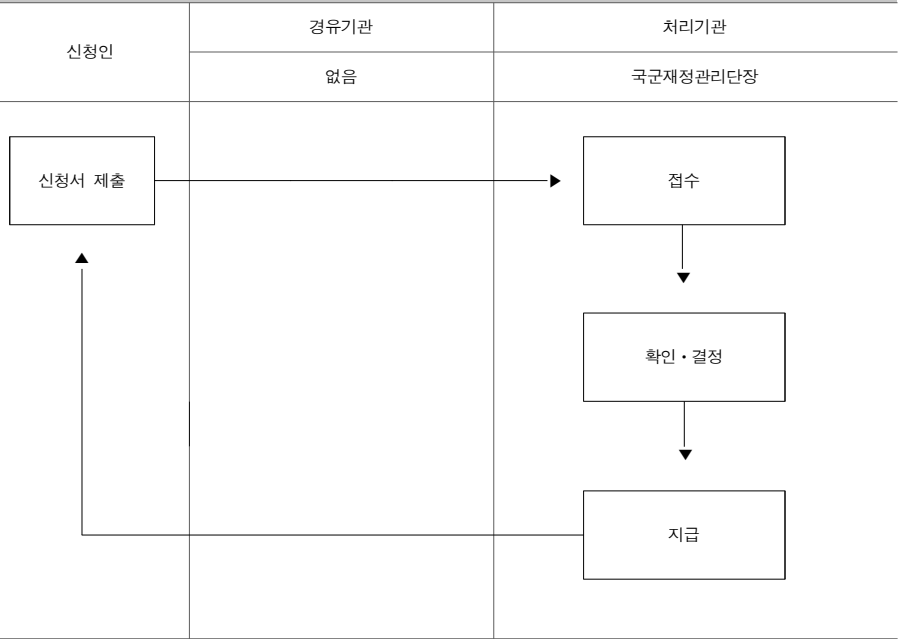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작성방법

1. 퇴역·퇴역유족연금 중 해당 사항 앞의 [] 안에 "V" 표시를 하십시오.
2. 신청인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3. 신청인의 연금증서번호란은 연금증서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적으십시오.
4. 신청인의 청구 사유란은 해당 사항의 [] 안에 "V" 표시를 하십시오.
5. 급여수령 금융회사 등은 반드시 국내 은행 또는 국내에 지점이 있는 은행 등 금융회사 등이어야 합니다.
6. 신청인의 계좌번호란에는 첨부하신 실명확인통장 사본의 계좌번호를 적으십시오.

처리절차



[] 대리인 선임장
[] 대리인 해임장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알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예 [] 아니요
	주소	연금번호	
	거주국명	거주기간	
	출국일	출국사유	

선임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예 [] 아니요
	주소		
	수급권자와의 관계	선임기간	

해임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선임 (해임) 사유	선임 사유	[] 해외이주	[] 승선	[] 국적상실
		[] 그 밖의 사유		
	해임 사유	[] 사망	[] 영주귀국	[] 하선
		[] 그 밖의 사유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을 선임(해임)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군재정관리단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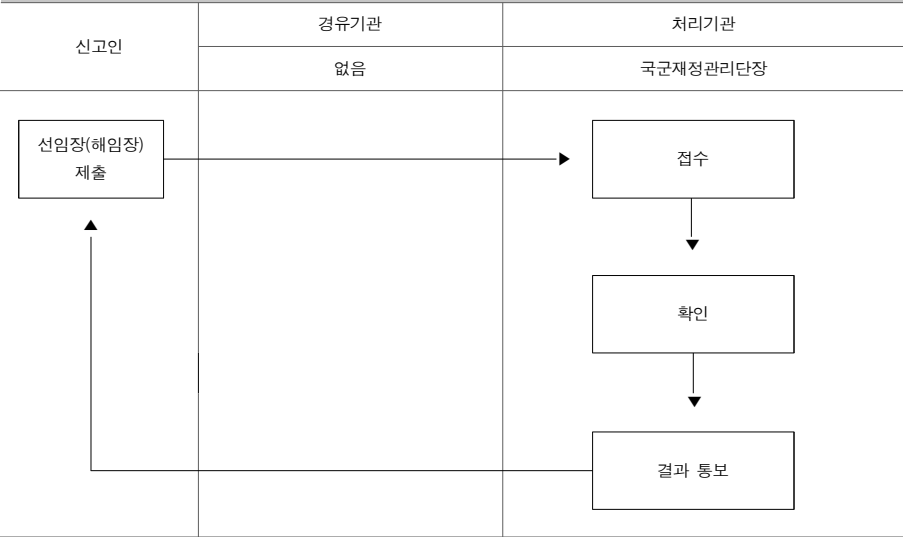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뒤 쪽>

작성방법

신고인과 선임대리인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처리절차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Personal Information Notification)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측시
------	-----	------	----

연금 수급권자 Pension Beneficiary	성명 Full Name (한글) (영문)	생년월일 Date of Birth
	자택 전화번호 Telephone Number	휴대전화번호 Mobile Number
	주소 Mailing Address	전자우편 E-mail Address
	연금종류 Type of Pension [] 퇴역 Retired [] 유족 Bereaved [] 상이 Disabled	
	연금번호 Pension Number	거주기간 Length of residence

국적 관계 Nationality	[] 영주권자 Permanent Resident [] 시민권자 Citizen	[] 그 외 1년 이상 거주자 Resided overseas more than a year
	취득일 Date of permanent residency or citizenship granted	국명 Country 번호 Citizenship No.

신분관계 Personal Information (Update)	구금 및 재판관계 Detention and trial	날짜 Date	사건내용 Case details	사건번호 Case No.
	재혼 여부 Remarriage	재혼일 Date of Remarriage	배우자 성명 Name of Spouse	
	사망일 Date of death			

가족관계 Family Information	관계 Relation to Beneficiary	성명 Full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주소 Mailing Address

국내 대리인 Authorized Agent in Korea	성명 Full Name	주민등록번호 National Identification Number
	자택 전화번호 Telephone Number	휴대전화번호 Mobile Number
	주소 Mailing Address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신고인 및 그 동거가족이 현주소에서 신고일 현재
까지 거주하고 있음을 신고합니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25 Paragraph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Pension
Act, this is to notify that the statements above are true.

날짜 Date 년(yy) 월(mm) 일(dd)
신고인 Full Name (서명 또는 인 Signature)

위 신고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확인번호:)

I certify that the statements in this document are true and complete to the best of my knowledge. (Confirmation Number:)

날짜 Date 년(yy) 월(mm) 일(dd)

()국 주재공관장
The Korean Consul in ()

직인

국군재정관리단장

Chief of the Armed Forces Financial Management Corps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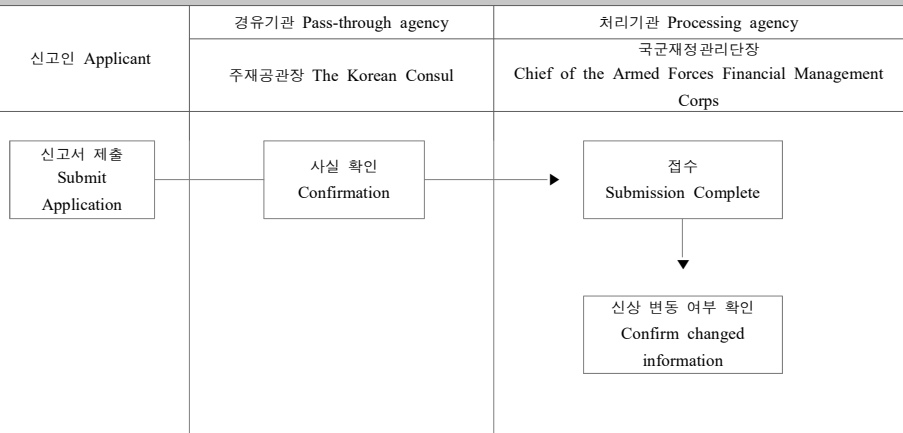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연금수급권자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The Mailing Address Section should be filled with the Postal address (residential address).
- 신분관계란에는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의 신상변동사항을 적으십시오.
The Personal Information Section should include information changes to the pension beneficiary.

처리절차 Procedures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Personal Information Notification)

※ 영문 작성 요망(Please fill out the form in English)

* 거주국의 공공기관 등에서 아래의 사실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알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연금 수급권자 Pension Beneficiary	성명 Full Name (한글) (영문)	생년월일 Date of Birth	
	자택 전화번호 Telephone Number	휴대전화번호 Mobile Number	
	주소 Mailing Address	전자우편 E-mail Address	
	연금종류 Type of Pension [] 퇴역 Retired [] 유족 Bereaved [] 상이 Disabled		
	연금번호 Pension Number	거주기간 Length of residence	

국적 관계 Nationality	[] 영주권자 Permanent Resident [] 시민권자 Citizen [] 그 외 1년 이상 거주자 Resided overseas more than a year	
	취득일 Date of permanent residency or citizenship granted	국명 Country

신분관계 Personal Information (Update)	구금 및 재판관계 Detention and trial	날짜 Date	사건내용 Case details	사건번호 Case No.
	재혼 여부 Remarriage	재혼일 Date of Remarriage	배우자 성명 Name of Spouse	
	사망일 Date of death			

가족관계 Family Information	관계 Relation to Beneficiary	성명 Full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주소 Mailing Address

국내대리인 Authorized Agent in Korea	성명 Full Name	주민등록번호 National Identification Number
	자택 전화번호 Telephone Number	휴대전화번호 Mobile Number
	주소 Mailing Address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신고인 및 그 동거가족이 현주소에서 신고일 현재 까지 거주하고 있음을 신고합니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25 Paragraph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Pension Act, this is to notify that the statements above are true.

날짜 Date 년(yy) 월(mm) 일(dd)

신고인 Full Name (서명 또는 인 Signature)

국군재정관리단장(Chief of the Armed Forces Financial Management Corps) 귀하

는(은) 본 공증인 앞에서 위의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였다.

공증인 는(은) 20__년 __월 __일 이를 인증한다.

On this __day of __, 20__, I, ____, a notary public, hereby certify that ____, who personally appeared and duly swore before me, signed and acknowledged that the preceding statements are true and correct.

Notary Public

PRINTED NAME		TELEPHONE NO		SEAL
COMMISSION NO		ADDRESS		
EXPIRY OF COMMISSION		SIGNATURE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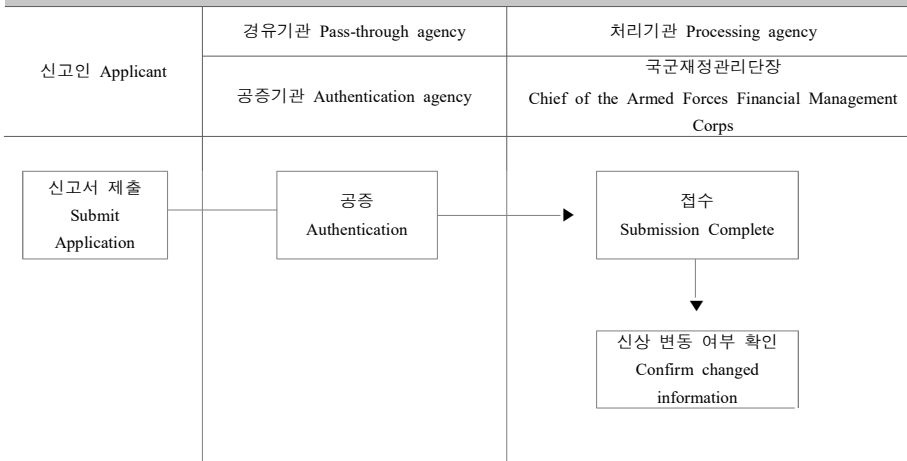
<뒤쪽>

첨부서류 Supplementary file attached	공증서류 또는 거주국 공공기관이 발행한 거주사실 확인서 1부 Authentication documents or residence certificate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연금수급권자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The Mailing Address Section should be filled with the Postal address (residential address).
- 신분관계란에는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의 신상변동사항을 적으십시오.
The Personal Information Section should include information changes to the pension beneficiary.

처리절차 Procedures



퇴역연금 등 급여의 종류 변경신청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기재란	성명		생년월일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예 [] 아니요
	주소		
	급여수령 금융회사 등 은행	계좌번호	
	* 퇴직시 신청했던 급여 수령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만 기재		

변경 신청 사항	[] 퇴역(유족)연금에서 퇴역(유족)연금일시금으로 변경
	[] 퇴역(유족)연금일시금에서 퇴역(유족)연금으로 변경
	[] 퇴역연금에서 퇴역연금공제일시금으로 변경(연금: 년 월, 공제일시금: 년 월)
	[] 퇴역연금일시금에서 퇴역연금공제일시금으로 변경(연금: 년 월, 공제일시금: 년 월)
	[] 퇴역연금공제일시금에서 퇴역연금으로 변경
	[] 퇴역연금공제일시금에서 퇴역연금일시금으로 변경
[] 기타(에서 으로 변경)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군재정관리단장 귀하

첨부서류	뒤 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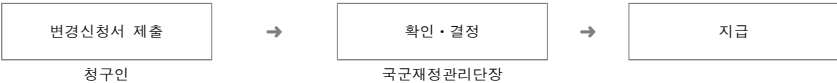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이미 수령한 급여는 급여를 수령한 다음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일수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퇴직시 신청했던 급여수령계좌에서 변경시만 제출)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급여의 종류 중 청구하려는 급여 앞의 [] 안에 "V" 표시를 하십시오.
- 청구인 기재란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 급여수령 금융회사 등은 반드시 국내 은행 또는 국내에 지점이 있는 은행 등 금융회사 등이어야 합니다.
- 청구인 기재란의 계좌번호란에는 첨부하신 실명확인통장 사본의 계좌번호를 적으십시오.
- 청구인 기재란의 공제일시금 청구란은 「군인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사람으로서 그 초과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퇴역연금공제일시금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연금 및 공제일시금 선택기간을 적은 후 서명 또는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 퇴역연금
[]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청구서
[] 퇴직수당

※ 1. 이 청구서는 퇴역연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법(일부기간 공제일시금 선택 포함)으로 청구하실 때 사용하시는 서식입니다.
2. 퇴역연금을 전액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 서식을 사용하지할 수 없습니다.
3.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기재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예 [] 아니요	
	주소			
	급여수령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은행		군번	
	공제일시금 청구	연금 선택기간 년 월	공제일시금 년 월	청구인 확인 (서명 또는 인)
	형벌 사항 [] 있음 [] 없음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형 확정 (형명:)(확정일:)(형량:)	
	퇴직 당시 소속 부대명		퇴직 연월일	
	학자금 대부	[] 있음 [] 없음	미납액 상환방법	[] 일시상환 [] 분할상환

소속 부대 기재란	형벌 사항 [] 있음 [] 없음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형 확정 (형명:)(확정일:)(형량:)			
	대부사항 [] 있음 [] 없음	대부종류	대부액	상환액	미납액	미납액 상환방법
		전세대부				[] 일시상환 [] 분할상환
	확인자	인사담당자	계급	성명	(인)	전화번호: () -
		()군 제 부대장 직인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군재정관리단장 귀하

첨부서류	뒤 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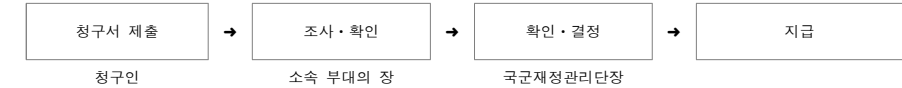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첨부서류	청구인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급여계좌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1부	수수료 없음
	소속 부대장	1. 별지 제10호서식의 장애경위조사서(상이연금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2. 상이등급이 적힌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상이연금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작성방법

- 급여의 종류 중 청구하려는 급여 앞의 [] 안에 "V" 표시를 하십시오.
※ 퇴역연금을 청구하는 사람으로서 20년을 초과하는 복무기간 중 일부기간에 대하여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을 갈음하여 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퇴역연금과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앞의 [] 안에 각각 "V" 표시를 하십시오.
- 청구인 기재란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 급여수령 금융회사 등은 반드시 국내 은행 또는 국내에 지점이 있는 은행 등 금융회사 등이어야 합니다.
- 청구인 기재란의 계좌번호란에는 첨부하신 실명확인통장 사본의 계좌번호를 적으십시오.
- 청구인 기재란의 공제일시금 청구란은 「군인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사람으로서 그 초과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퇴역연금공제일시금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연금 및 공제일시금 선택기간을 적은 후 서명 또는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 복무기간에 대하여 퇴역연금을 갈음하여 퇴역연금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청구인 기재란의 형벌 사항란과 소속 부대 기재란의 형벌 사항란에는 "[] 있음, [] 없음" 중 해당하는 [] 안에 "V" 표시를 하고,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로 형벌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진행 중, 형사재판 계류 중, 형 확정 등 해당하는 [] 안에 "V"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소속 부대장 기재란의 형벌 사항란을 작성하는 경우 소속 부대의 인사담당자는 형벌사항을 따로 조사·확인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소속 부대 기재란의 공무상 질병·부상란은 상이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적으시고, 제3자의 가해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난의 [] 안에 "V" 표시를 한 후 첨부하여 제출하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장애경위조사서에 가해자 성명, 전화번호 등을 적으십시오.
- 소속 부대 기재란의 대부 사항란은 "[] 있음, [] 없음" 중 해당하는 [] 안에 "V" 표시를 한 후 대부금 미납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 종류, 대부액, 상환액 및 미납액을 적으십시오. 이 경우 미납액 상환방법은 청구인이 희망하는 상환방법을 확인하여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중 해당하는 [] 안에 "V"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 기여금 반환 [] 퇴역연금일시금 청구서
[] 퇴직일시금 [] 퇴직수당

- ※ 1. 이 청구서는 퇴직급여를 전액 일시금으로 청구할 경우 사용하시는 서식입니다.
2.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이 연금을 일부라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3.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대상이 되는 사람은 공적연금 연계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www.ppsl.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예 [] 아니오	
주소			
급여수령 금융기관 은행		계좌번호	
계급·호봉		군번	
형벌 사항 [] 있음 [] 없음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형 확정 (형명:)(확정일:)(형량:)		
퇴직 당시 소속부대명		퇴직 연월일	

소속 부대 기재란	형벌 사항 [] 있음 [] 없음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형 확정 (형명:)(확정일:)(형량:)			
	대부사항 [] 있음	대부종류	대부액	상환액	미납액
	[] 없음	전세대부			
확인자	인사담당자	계급	성명	(인) 전화번호: () -	
	()군 제 부대장 직인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제29조 및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군재정관리단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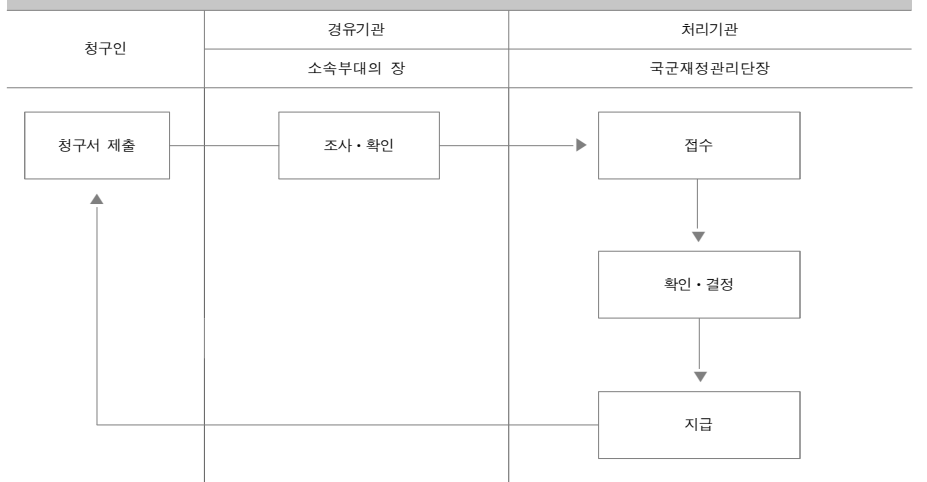
첨부서류	1. 급여선택확인서(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전역한 사람 중 본인이 희망하여 퇴역연금일시금을 청구한 사람만 제출합니다) 1부 2.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	-----------

<뒤 쪽>

작성방법

- 급여의 종류 중 청구하려는 급여 앞의 [] 안에 "V" 표시를 하십시오.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연금과 군인연금을 연계한 경우에는 퇴직수당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기재란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 급여수령 금융기관은 반드시 국내 은행 또는 국내에 지점이 있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어야 합니다.
- 청구인기재란의 계좌번호란에는 첨부하신 실명확인통장 사본의 계좌번호를 적으십시오.
- 청구인기재란의 형벌사항란과 소속부대기재란의 형벌사항란에는 "[]있음, []없음" 중 해당하는 [] 안에 "V" 표시를 하고,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로 형벌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진행 중, 형사재판 계류 중, 형 확정 등 해당 사항의 [] 안에 "V"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소속부대기재란의 형벌사항란을 작성하는 경우 소속부대의 인사담당자는 형벌사항을 별도로 조사·확인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소속부대기재란의 대부사항란은 "[]있음, []없음" 중 해당하는 [] 안에 "V" 표시를 한 후 대부금 미납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종류, 대부액, 상환액 및 미납액을 적으십시오. 이 경우 미납액은 일시상환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분할연금·일시금 지급 (선)청구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에 [] 아니요
	급여수령 금융기관	금융기관	계좌번호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군·계급	군번	
	혼인기간		
① 선청구 여부	[] 선청구	② 재판 및 재산분할 합의 사항 여부	[] 없음 [] 있음
③ 퇴직연금·일시금 분할지급 비율	퇴직연금·일시금의 (%)		
④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	혼인 기간 중 ~ .까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 (사유: [] 실종 [] 거주불명 [] 합의 [] 재판)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군재정관리단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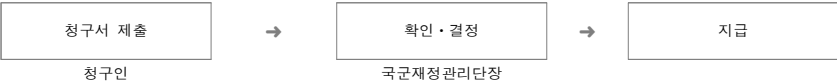
첨부서류		
청구인 첨부서류	1. 청구자의 혼인관계증명서 (혼인 및 이혼 이력 표시) ※ 사실혼인 경우에는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판결문 사본 1부 첨부 2. 재판상 이혼으로 인한 퇴직급여 분할 청구 시 판결문 사본 1부 첨부 ※ 별도의 재산분할 사항(합의또는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문 사본 또는 연금조정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성방법

- ①란 분할연금 개시연령 도달 전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과 이혼한 경우 퇴직급여의 분할지급을 미리 청구하는 경우에 “/” 표시하여 주십시오.(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일시금을 청구한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 ②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과 이혼분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 “퇴직연금·일시금 분할합의 있음”시 분할연금·일시금 분할지급 조정신청서(별지제14호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후 합의에 의한 재조정은 할 수 없습니다.
- ③란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과 퇴직급여 분할지급 수급자 당사자끼리 합의된 퇴직급여 분할비율 또는 재판에 의한 조정비율을 기재 하시고, 합의에 의해 조정된 퇴직급여 분할비율은 추후 재조정 할 수 없습니다.
- ④란은 혼인 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기간을 기재하시고, 해당사유 []안에 “/” 표시하여 주십시오. 해당사항이 없 으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⑤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확인서명은 재판에 의한 조정 시 또는 중재에 의한 재산분할 합의 시에는 생략하여도 됩니다.

처리절차



퇴역연금·일시금 분할지급 신청구 취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에 [] 아니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군·계급		군번		
안내사항 ※ 안내사항을 읽고 []에 “√”하기 바랍니다.	퇴직급여 분할지급 신청구를 취소하면 다시 신청구를 할 수 없으며, 향후 퇴직급여 분할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퇴직급여 분할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라 퇴역연금·일시금 분할지급 신청구를 취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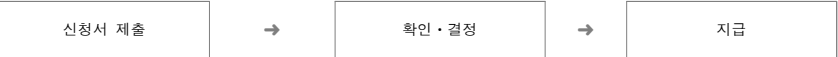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군재정관리단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첨부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이어야 합니다. 2.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사망등재 후) 또는 사망진단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청구인

국군재정관리단장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퇴역연금·일시금 분할지급 조정 신청서

[] 합의 [] 재판 [] 분할연금수급권 소멸

※ 신청하는 해당사유에 체크(√)하세요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알 폭>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	-----

신 청 인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군·계급	군번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예 [] 아니요	
	퇴역연금·일시금 분할 신청한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예 [] 아니요	

① 퇴직연금·일시금 분할조정사유	[] 당사자간 합의(중재)에 의한 퇴직급여 분할지급 비율 조정 [] 재판에 의한 퇴직급여 분할지급 비율 조정 (확정일: 년 월 일)
② 퇴직연금·일시금 분할지급 조정비율	퇴직연금·일시금의 (%)
③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 하지 아니하였던 기간	혼인 기간 중 . . . ~ . . . 까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사유: [] 실종 [] 거주불명 [] 합의 [] 재판)
④ 분할연금수급권 소멸사유	[] 분할연금수급자 사망 (사망일: 년 월 일)

「군인연금법」 제23조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퇴역연금·일시금 분할 비율을 조정하며,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의
의
의

(확인자)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

(서명 또는 인)

퇴역연금·일시금 분할지급 신청한 사람

(서명 또는 인)

국군재정관리단장 귀하

첨부서류	뒤 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신청인 제출서류	퇴직급여 분할 지급 조정 시 제출서류	1. 확인자의 신분증 사본 1부.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2. 재산분할 재판시 : 판결문 사본 1부. 3. 합의 조정시 - 신청서 ⑤란에 서명시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본인 서명 확인서 1부. - 신청서 ⑤란에 도장 날인 시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자의 인감증명서 1부.	수수료 없음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 지 않을 시 제 출서류	1. 확인자의 신분증 사본 1부. 2. 법원의 재판 판결문 사본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분할연금 소멸 시 제출서류	1. 분할연금수급자 사망시에는 조정신청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다만, 사망사고가 안 된 경우에는 조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①란의 퇴직급여 분할조정사유에 대해 해당사항 □안에 “√” 표시하여 주십시오.
- 재판에 의한 비율조정인 경우에는 판결문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2. ②란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과 퇴직급여 분할지급 수급자 당사자끼리 합의된 퇴직급여 조정비율 또는 재판에 의한 조정비율을 기재 하시고, 합의에 의해 조정된 퇴직급여 분할조정 비율은 추후 재조정 할 수 없습니다.
3. ③란은 혼인 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기간을 기재하시고, 해당사유 [] 안에 “√” 표시하여 주십시오. 해당사항이 없으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4. ④란의 퇴직연금조정사유는 분할연금수급자 사망한 경우에 작성하여도 됩니다. 해당사항 [] 안에 “√” 표시하여 주십시오.
- 분할연금수급자 사망으로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②, ③, ④란은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5. ⑤란의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 확인서명은 재판에 의한 조정 시 또는 중재에 의한 재산분할 합의 시에는 생략하여도 됩니다.
6. 제출서류는 청구자 신분증과 각 서류별 증명서(주민번호 13자리 모두 표시되도록 출력)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확인·결정 → 조정 지급

신청인 국군재정관리단장

[] **행방불명 후 생환으로 인한 퇴역연금 차액**
[] **급여제한 사유 소멸로 인한 잔여 퇴직급여** **청구서**
[] **급여제한 사유 소멸로 인한 잔여 퇴직수당**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소속하였던 부대명 군 제 부대		퇴직 당시 계급	군번
성명		생년월일	퇴직 연월일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에 [] 아니오
주소		청구사유 확정일	
청구인			
청구 사유			
[] 1. 행방불명 후 생환으로 인한 차액 청구(연금번호:)			
[] 2. 불기소 처분을 받음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함			
[]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남			
[] 5. 지명수배·통보가 해제됨			
급여수령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은행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및 제4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군재정관리단장 귀하

청구인 첨부서류	1.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불기소처분결정서 사본(청구 사유 제4호 해당자만 제출합니다) 1부 2.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형사재판확정 증명서(청구 사유 제5호 또는 제6호 해당자만 제출합 니다) 1부 3.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작성방법		
1. 청구 사유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방불명 후 생환으로 인한 퇴역연금 차액 앞의 [] 안에 "V" 표시를 하고, 청구 사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이연금수급권 소멸로 인한 퇴역연금 앞의 [] 안에 "V" 표시를 하며, 청구 사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이연금 수급권 상실로 인한 차액 앞의 [] 안에 "V" 표시를 하고, 청구 사유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여 퇴직급여 및 잔여 퇴직수당 앞의 [] 안에 각각 "V" 표시를 하십시오.		
2. 청구인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3. 청구인의 청구사유란은 해당 사항의 [] 안에 "V" 표시를 하시고 증거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4. 급여수령 금융회사 등은 반드시 국내 은행 또는 국내에 지점이 있는 은행 등 금융회사 등이어야 합니다.		
5. 청구인의 계좌번호란에는 첨부하신 실명확인통장 사본의 계좌번호를 적으십시오.		
처리절차		
청구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없음	국군재정관리단장
청구서 제출		접수
		확인·결정
		지급

[] 재취업
[] 재퇴직 신고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측시
------	-----	------	----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에 [] 아니요
	주소		
	퇴역연금증서번호		
	사유 [] 재취업(재임용) [] 재퇴직		

신고 내용	재취업· 재퇴직	구분 [] 공무원 [] 사립학교교직원	재취업·재퇴직 연월일
		기관명	직급·직책
		합산신청 여부 (공무원 등 재/퇴직 기관에서의 신청 여부) [] 신청했음 [] 신청하지 않았음	군무부서 전화번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재취업·재퇴직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사실을 확인하여 보냅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직인

담당부서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 -

국군재정관리단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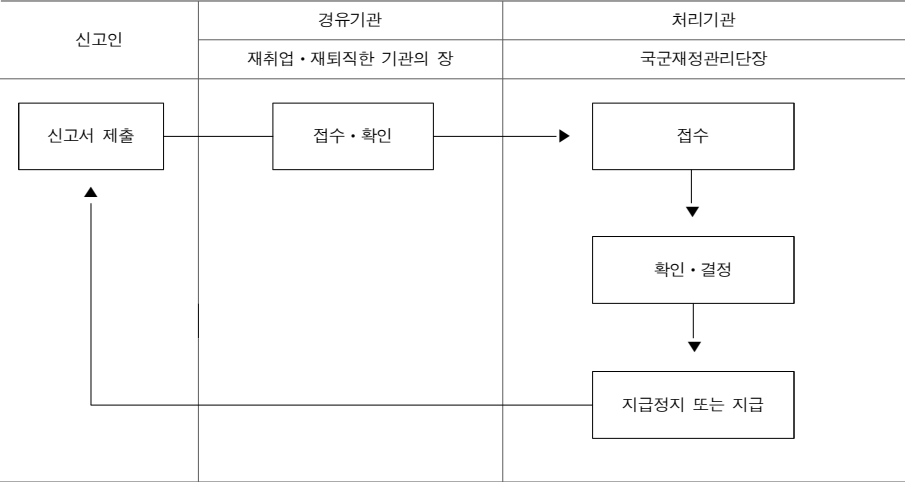
첨부서류	재취업 또는 재퇴직한 기관의 인사발령장 사본(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 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성방법

1. 신고인의 퇴역연금증서번호란은 연금증서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적으십시오.
2. 신고내용의 재취업·재퇴직 연월일란에는 다음의 기준을 참고하여 날짜를 적으십시오.
 - 가. 재취업(재임용)의 경우: 퇴역연금수급자가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다시 임용(취임)된 날
 - 나. 재퇴직의 경우: 퇴역연금수급자가 위 재임용기관에서 다시 퇴직(퇴임)된 날

처리절차



연금 외 소득 신고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연금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연금증서번호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예 [] 아니요		
	주소						
신고 내용	소득 종류 [] 사업소득 [] 근로소득						
	사유 발생일 년 월 일			법인명(상호)			
	직장(사업장) 주소				직장(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예상소득금액			

「군인연금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연금지급정지액의 산정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의
호
의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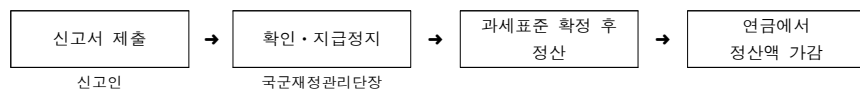
국군재정관리단장 귀하

작성 방법

1. 신고내용의 소득 종류란은 해당 소득의 종류에 "V"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신고내용의 사유 발생일란에는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개업 연월일을,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입사일을 적으십시오.
3. 신고내용의 예상 소득금액란에는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소득금액을 적으십시오.

※ 과세표준 확정 후 실제 소득과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 연금정지액을 다시 산정하여 정산합니다.

처리절차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연금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연금증서번호
	주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에 [] 아니요
	주소		e-mail
신청 내용	사유 [] 퇴직(폐업) [] 소득변동	소득 종류 [] 근로소득 [] 사업소득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변동일(퇴직일·폐업일)	변동 소득금액	
	세부사항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금지급정지액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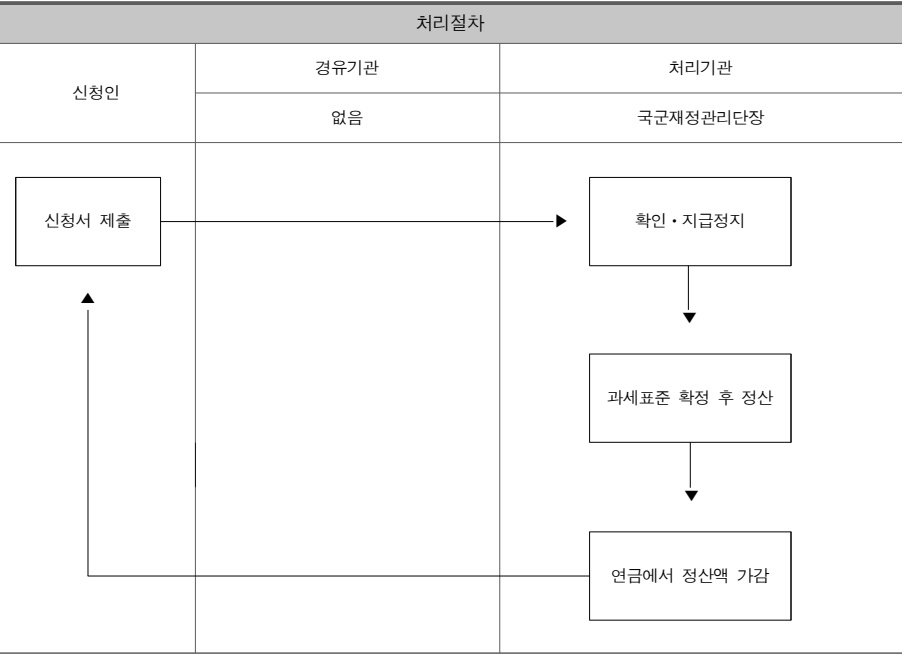
국군재정관리단장 귀하

첨부서류	1. 조정을 받으려는 기간 동안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 등 해당 연도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연봉계약서 사본 등 해당 연도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퇴직 또는 폐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사업소득의 경우: 폐업사실 증명원, 휴업사실 증명원 등 폐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근로소득의 경우: 퇴직(경력) 증명서, 인사발령문 등 퇴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작성방법
1. 연금수급자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2. 신청내용의 변동일란에는 퇴직 또는 폐업을 한 날 등 소득이 변동된 날짜를 적으십시오. 3. 신청내용의 변동 소득금액란에는 당초 소득액에서 변동된 소득액을 적으십시오. ※ 과세표준 확정 후 실제 소득과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연금지급정지액을 다시 산정하여 정산합니다. 4. 신청내용의 세부사항란은 변경사유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 적으십시오.



[] 기여금 반환
[] 퇴역유족연금
[]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퇴직유족일시금

[] 특례급여
[] 퇴역유족연금부가금
[] 퇴역유족연금일시금
[] 퇴직수당

청구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에 [] 아니요			
	주소					
	급여수령 금융회사 등	은행	계좌번호			
	군인·공무원·사학연금 수급 여부 [] 수급 [] 미수급	연금 종류	[] 군인 퇴역(상이)연금 [] 공무원(조기)퇴직연금 [] 사학(조기)퇴직연금			
	학자금 대부	[] 있음 [] 없음	미납액 상환방법	[] 일시상환 [] 분할상환		
	사망자와의 관계					
	동순위 수급권자	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해유무
		1				[] 있음 [] 없음
		2				[] 있음 [] 없음
3					[] 있음 [] 없음	
4					[] 있음 [] 없음	
※ 장해유무는 자녀인 경우만 기재						

사망한 군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급	군번
	사망일	사망 장소
	사망구분 [] 퇴역연금 수급 중 사망	[] 군 복무 중 사망 [] 공무상 사망 심의 신청 [] 공무상 사망 심의 미신청

소속 부대 기재란	제3자 가해사실 [] 있음 [] 없음					
	대부사항 [] 있음 [] 없음	대부종류	대부액	상환액	미납액	미납액 상환방법
		전세대부				[] 일시상환
						[] 분할상환
	확인자	인사담당자	계급	성명	(인)	전화번호: () -
		()군 제 부대장 직인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제18조제1항·제3항, 제35조제1항 및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군재정관리단장 귀하

첨부서류	뒤 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청구인 제출서류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특례급여 외의 급여	1. 군인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3.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청구인이 「군인연금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장해가 있는 19세 이상의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4.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임신 증임을 증명하는 진단서(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임신 중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5.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1부 6. 혼인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1부 7. 부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인이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8.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특례급여	1. 특례급여 사용 계획서 1부 2. 군인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3. 사망한 군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망한 군인의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장애인 증명서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및 장애인증명서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청구하려는 해당 급여 앞에 "V"표시를 하십시오. 2. 청구인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3. 급여수령 금융회사 등은 반드시 국내 은행 또는 국내에 지점이 있는 은행 등 금융회사 등이어야 합니다. 4. 청구인의 계좌번호란에는 첨부하신 실명확인통장 사본의 계좌번호를 적으십시오. 5. 청구인의 퇴역·퇴직연금 등 수급 여부란은 청구인이 공무원·군인·사학연금에서 퇴직(퇴역)연금을 수급 중인지 여부를 표시하는 난입니다. 6. 청구인의 동순위 수급권자란은 아래의 순위를 확인하여 동순위자가 있는 경우 적으십시오. * 유족의 우선순위: ① 19세 미만이거나 장해가 있는 자녀 ②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장해가 있는 19세 미만 또는 장해가 있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사망한 군인이 부양하던 손자녀 ③ 부모 ④ 사망한 군인이 부양하던 조부모 ※ 배우자는 위 유족 중 우선순위자와 동순위이며,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유족에서 제외됩니다. 7. 소속 부대 기재란의 대부사항란은 " [] 있음 , [] 없음 " 중 해당하는 [] 안에 "V" 표시를 한 후 대부금 미납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종류, 대부액, 상환액 및 미납액을 적으십시오. 이 경우 미납액에 대한 상환방법은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가. 퇴역유족연금·퇴역유족연금부가금·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의 경우: 청구인이 희망하는 상환방법을 확인하여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중 해당 사항의 [] 안에 "V" 표시 나. 기여금반환·특례급여·퇴직유족일시금·퇴역유족연금일시금의 경우: 일시상환의 [] 안에 "V" 표시	

처리절차						
청구서 작성 청구인	→	조사·확인 소속 부대의 장	→	확인·결정 국군재정관리단장	→	지급

퇴직유족급여 등분 청구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에 [] 아니요	
	주소		사망한 군인과의 관계	
	급여수령 금융회사 등 은행		계좌번호	
	군인·공무원·사학연금 수급 여부 [] 수급 [] 미수급		연금 종류 [] 군인 퇴역(상이)연금(. .) [] 공무원 (조기)퇴직연금(. .) [] 사학 (조기)퇴직연금(. .)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에 [] 아니요
	주소		사망한 군인과의 관계
	급여수령 금융회사 등 은행		계좌번호
	군인·공무원·사학연금 수급 여부 [] 수급 [] 미수급		연금 종류 [] 군인 퇴역(상이)연금(. . .) [] 공무원 (조기)퇴직연금(. . .) [] 사학 (조기)퇴직연금(. . .)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에 [] 아니요
	주소		사망한 군인과의 관계
	급여수령 금융회사 등 은행		계좌번호
	군인·공무원·사학연금 수급 여부 [] 수급 [] 미수급		연금 종류 [] 군인 퇴역(상이)연금(. . .) [] 공무원 (조기)퇴직연금(. . .) [] 사학 (조기)퇴직연금(. . .)

「군인연금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이
이
이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군재정관리단장 귀하

첨부서류	뒤 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청구인 제출서류	1.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청구인이 「군인연금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장해가 있는 19세 이상의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임시 증임을 증명하는 진단서(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임시 중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혼인관계증명서 1부 5. 부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인이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6.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장애인 증명서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및 장애인증명서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청구인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 2.급여수령 금융회사 등은 반드시 국내 은행 또는 국내에 지점이 있는 은행 등 금융회사 등이어야 합니다.
- 3.청구인의 계좌번호란에는 첨부하신 실명확인통장 사본의 계좌번호를 적으십시오.

처리절차

청구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없음	국군재정관리단장
청구서 작성		접수 확인·결정 등분 지급

퇴역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예 [] 아니요		
	주소						
	관계 - 사망군인의 () - 수급권소멸자의 ()		수급권 이전사유 [] 동순위자의 수급권 소멸 [] 선순위자의 수급권 소멸 [] 1년 이상 행방불명				
	급여수령 금융회사 등 은행		계좌번호				
	군인·공무원·사학연금 수급 여부 [] 수급 [] 미수급		연금 종류 [] 군인 퇴역(상이)연금 [] 공무원 (조기)퇴직연금 [] 사학 (조기)퇴직연금				
동순위 수급권자	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해유무		
	1				[] 있음 [] 없음		
	2				[] 있음 [] 없음		
	3				[] 있음 [] 없음		
	4				[] 있음 [] 없음		
※ 장해유무는 자녀인 경우만 기재							

수급권 소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연금증서번호		사유 발생일	
사망한 군인	소속하였던 부대명		복무연수 년 월	
	계급		군번	

「군인연금법」 제31조 및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귀하

첨부서류	뒤 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청구인 제출서류	1. 수급권 이전사유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가.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2. 수급권 이전사유가 제1호 외의 사유인 경우 가. 사망진단서(퇴역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그 사망정리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나. 퇴역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다.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퇴역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해가 해소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장애인증명서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및 장애인증명서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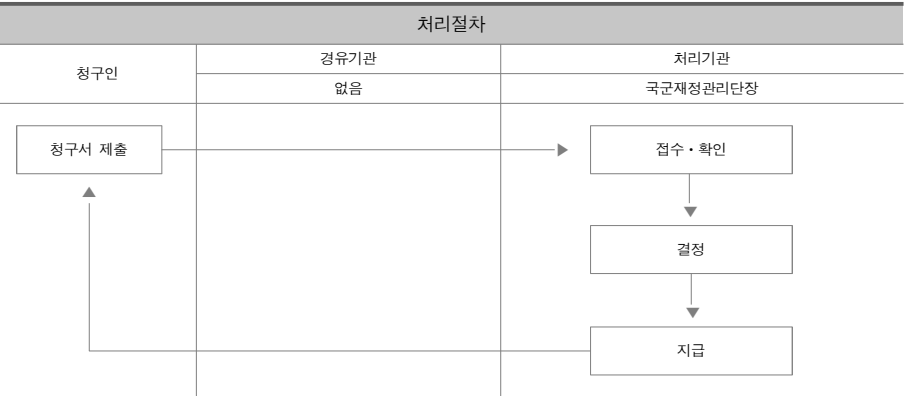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청구인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2. 급여수령 금융회사 등은 반드시 국내 은행 또는 국내에 지점이 있는 은행 등 금융회사 등이어야 합니다.
3. 청구인의 계좌번호란에는 첨부하신 실명확인통장 사본의 계좌번호를 적으십시오.
4. 청구인의 연금수급 여부는 청구인이 군인·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서 청구인의 퇴직연금을 수급하는지를 해당 난에 "V" 표시하십시오.
5. 청구인의 동순위 수급권자란은 아래의 순위를 확인하여 동순위자가 있는 경우 적으십시오.
* 유족의 우선순위: ① 19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자녀 ②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장애 상태에 있는 19세 미만 또는 장애 상태에 있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사망한 군인이 부양하던 손자녀 ③ 부모 ④ 사망한 군인이 부양하던 조부모 ※ 배우자는 위 유족 중 우선순위자와 동순위이며,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유족에서 제외됩니다.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연금 수급 권자	성명			생년월일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예 [] 아니요		
	주소						
	연금종류 [] 퇴역연금 [] 퇴역유족연금						
	연금번호			상실일			
	상실사유 [] 사망 [] 재혼 [] 친족관계 종료 [] 연금수급권자 연령 19세 도달 [] 연금수급권자 장애 해소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예 [] 아니요		
	주소						
	연금수급권자와의 관계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0
201
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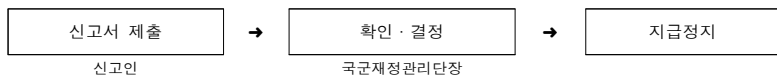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군재정관리단장 귀하

첨부서류	연금수급권의 상실사유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연금수급권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재혼 또는 친족관계 종료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연금수급권자가 19세에 도달한 경우: 없음 4. 연금수급권자의 장애가 해소된 경우: 요양기관 of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군인연금과	
연 락 처	(02) 748 - 6672